

##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1항 중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“각호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각 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안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7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

안 제2조제2항 “각호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각 호에 따라”로 한다.

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

1.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·결정 및 승인
2.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
3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 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<u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, 등록재산 등에 대한 심사·결정을 위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(개정안과 같음)
<p><u>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</p> <p>1. 5인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</p> <p>2. 4인의 위원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2명과 소속공무원 2명으로 한다</p> <p>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.</p> <p>1.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인중에서 선임</p> <p>2.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인중에서 선임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제2조(구성) ①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</u></p> <p>1. 7명의 위원은 법관·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</p> <p>2. 4명</p> <p>②</p> <p>1. .... 7명</p> <p>2. .... 4명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구성) ① ..... ..... ..... 1명 ..... 각 호에 따라 .....</p> <p>1. 7명의 위원은 법관, 교육자,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추천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..... ..... 각 호에 따라 .....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 <p>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3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 중 법 제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li> <li>2.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</li> <li>3.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</li> <li>4.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</li> <li>5.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</li> <li>6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</li> </ol> <p>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충청북도 소속 4급이하 공무원,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충청북도의회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시·군의회 의원, 시·군의 4급 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</li> </ol>	<p>제3조(기능)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·결정 및 승인</p>	<p>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안건 심사·결정 및 승인</li> <li>2. 충청북도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 심의</li> <li>3.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</li> </ol>
<신설>	<p>제4조(심사기준)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</p>	(개정안과 같음)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u>제4조</u> 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~③(생략)	<u>제5조</u> 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 ①~③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<u>제5조</u> 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~②(생략)	<u>제6조</u> (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) ①~②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<u>제6조</u> (위원회의 회의 등) ①~② (생략) 1.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<u>조사의뢰</u> 및 법 제8조제12항의 <u>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</u>	<u>제7조</u> (위원회의 회의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 <u>계인 출석요구</u> 및 법 제8조제11항의 <u>규정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 위임</u>	(개정안과 같음)
<u>제7조</u> 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(생략) ② <u>간사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</u> <u>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</u>	<u>제8조</u> (위원회의 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..... <u>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</u> <u>사무관으로 한다.</u>	(개정안과 같음)
<u>제8조</u> (수당 등) (생략)	<u>제9조</u> (수당 등)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<u>제9조</u> (연차보고서 제출) (생략)	<u>제10조</u> (연차보고서 제출)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
<u>제10조</u> (위원회의 운영규정) (생략)	<u>제11조</u> (위원회의 운영규정) (현행과 같음)	(개정안과 같음)